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000호

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및 용도지역 환원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773호(2019.12.18)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고시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804호(2022.12.26)로 지구계획 변경(2차) 승인 고시된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5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및 용도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으로 환원 고시하고, 같은 법 제9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서류는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과(055-225-4215),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부(055-210-8527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https://www.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2023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

1.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구역의 명칭, 위치 및 면적

가. 명칭 :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

나. 위치 :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55-1번지 일원

다. 면적: 31.176.9 m²

2.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사유: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이 결정·고시된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

※ 지구계획 승인(2019.12.18 고시)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이 결정·고시되었음

3.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: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5조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 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[붙임]

[붙임] 도시관리계회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

1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창원시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		구 분	면 적(m²)				구성비(%)	비고
		ी च	기 정	병 변경		변경후	1/84(%)	
		총 계	969,510,000.0		_	969,510,000.0	100.0%	
		소 계	61,427,000.2	감)	31,176.9	61,395,823.3	6.3%	
	주	제1종전용주거지역	8,042,556.0		_	8,042,556.0	0.8%	
	거	제2종전용주거지역	3,356,033.6		-	3,356,033.6	0.3%	
₋	지 역	제1종일반주거지역	14,112,338.5		-	14,112,338.5	1.5%	
도		제2종일반주거지역	24,635,138.7	감)	31,176.9	24,603,961.8	2.5%	
시		제3종일반주거지역	8,336,394.9		_	8,336,394.9	0.9%	
지		준주거지역	2,944,538.5		-	2,944,538.5	0.3%	
역	상	소계	10,514,620.9		-	10,514,620.9	1.1%	
	업	중심상업지역	1,218,627.0		_	1,218,627.0	0.1%	
	지	일반상업지역	8,176,080.9		_	8,176,080.9	0.8%	
	역	근린상업지역	263,347.0		_	263,347.0	0.0%	

		유통상업지역	856,566.0		_	856,566.0	0.1%	
	공	소계	46,781,388.6		_	46,781,388.6	4.8%	
	업	전용공업지역	_		_	_	0.0%	
	지	일반공업지역	38,455,084.7		_	38,455,084.7	4.0%	
	역	준공업지역	8,326,303.9		_	8,326,303.9	0.9%	
	녹	소 계	356,586,760.0	증)	31,176.9	356,617,936.9	36.8%	
	지	보전녹지지역	14,664,009.0		_	14,664,009.0	1.5%	
	기	생산녹지지역	4,901,895.0		_	4,901,895.0	0.5%	
	역	자연녹지지역	337,020,856.0	증)	31,176.9	337,052,032.9	34.8%	
	관	소 계	96,734,820.7		_	96,734,820.7	10.0%	
비	리	보전관리지역	32,116,971.0		_	32,116,971.0	3.3%	
도	기	생산관리지역	21,959,112.7		_	21,959,112.7	2.3%	
시	역	계획관리지역	42,658,737.0		_	42,658,737.0	4.4%	
지		농림지역	172,034,278.3		_	172,034,278.3	17.7%	
역		자연환경보전지역	105,407,918.0			105,407,918.0	10.9%	
	미지정		120,023,213.3		_	120,023,213.3	12.4%	

* 기정 : 창원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창원시 고시 제2023-233호, 2023.12.07.) 나.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ㅇ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	 구 분		구성비(%)	비고			
	丁 屯	기 정	변 경		변경후	1 8 4 (%)	비고
	총 계	31,176.9	_		31,176.9	100.0	
주거	소 계	31,176.9	감)	31,176.9	_	_	
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31,176.9	감)	31,176.9	_	_	
녹지	소 계	_	증)	31,176.9	31,176.9	100.0	
지역	자연녹지지역	_	증)	31,176.9	31,176.9	100.0	

ㅇ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위 치	용도 기 정	.지역 변 경	면적 (m²)	용적률 (%)	결정(변경사유)
_	창원시 진해구 태백동	제2종 일반주거지역	자연녹지지역	31,176.9	지구단위계획에 의함	○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환원

2. 용도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가. 개발제한구역

ㅇ 창원시 도시관리계획변경(개발제한구역 해제) 내용

ユ単	구영명	이 커	면 적(k㎡)			मो न
ੀ ਦ	7 7 7	# 4	기 정	변 경	변경후	미끄
변경	개발제한구역	경상남도 창원시 일원	248.3712931	증) 0.0311769	248.40247	

※ 기정 : 창원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(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447호, 2023.08.04.)

ㅇ 용도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위 치	면적(㎢)	변경사유
변경	_	경상남도 창원시 일원	248.3712931k㎡ ⇒ 248.40247k㎡ 중) 0.0311769k㎡	·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 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이 결 정·고시된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관 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 당하여 개발제한구역 환원